



해고자 원직복직 산자부 천막농성 75일차 / 피켓 시위 100일차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무비 착복 중단! 직접고용 쟁취! 발전 비정규직 천막농성 58일차

2020년, 노동자 민중에게 희망찬 한해로..



[2020년, 전태일 열사 앞에서 민주노조 정신을 되새기며...]

발전노조 시무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열사묘역 앞에서 투쟁 승리 결의

2020년, 발전노조는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1월 2일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진행했다.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앞에서 민주노조의 정신을 되새기며 올 한해 힘찬 활동을 다짐했다. 또한 2020년 노동자 민중의 투쟁 승리를 결의하며 열사들의 묘역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고자 원직복직, 직접고용 쟁취와 노동조건 개선, 노동자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다 같이 힘을 모아내자.

7명을 죽음으로 내몬 마사회, 고 문중원 열사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하라!



작년 11월 29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이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인 고 문중원 열사가 한국마사회의 갑질과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정경마 지시를 벗어날 수 없는 부조리한 구조, 일부 조교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시키는 대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갑질 구조, 마방을 받기 위해 조교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마사회 간부와 친분의 유무로 마방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현실, 선진경마를 이유로 일하는 사람 위에 존재하는 경마장 운영 방식, 위험

한 노동환경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말 위에 오르지만 임금도 퇴직금도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의 현실을 고인

한국마사회는 조교사에게 면허를 교부하고, 마방 임대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 기수들은 조교사와 기승 계약이 없으면 말을 타지 못한다. 여기에 기수는 매년 마사회의 기수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마사회의 공고한 통제 아래 마사회 · 조교사 · 기수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로 연결된 셈이다.

2005년 부산경마공원이 개장한 이후 일곱 번째 죽음이다. 유독 부산경마공원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제주, 서울에는 없는 '선진경마'를 내세워 기수, 마필관리사의 등골을 짜내며 무한경쟁으로 내몬 때문이다.

한국마사회 문중원 열사가 썩어빠진 마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며, 목숨을 끊은 지 41일째 되어가지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서울로 올라와 추운 길거리에 누워있다. 유가족과 공공운수노조는 시민대책위와 함께 고 문중원 열사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투쟁 중이다.

한국마사회는 지금 당장 교섭에 나와 열사 유족에 대해 사과하고, 비정상적인 운영체제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



2020년 바뀌는 것 (법, 법률, 지침 개정되는 것 중 일부)

1. 가족돌봄휴가 신설 (시행 : 2020.1.1.)

구 분	현행	개정
제 도	가족돌봄휴직제도만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추가 신설
사 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현행 휴직사유 + 자녀 양육 사유 추가
가족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현행 가족 + 조부모, 손자녀 추가
사용방법	연간 90일(1회 30일 이상)	연간 90일(가족돌봄휴가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시행 : 2020.1.1.)

구 분	주요 내용
청구사유	① 가족돌봄, ② 본인 질병/사고, ③ 55세 이상 은퇴준비, ④ 학업기간
사용기간	1년(단, 2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학업은 연장 없음
단축시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권리보호	①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② 단축 종료 후 동일 업무 복귀 의무 ③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④ 연장근로 요구금지 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교대근무자에게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다. (시행 : 2020.1.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 6. 어린이날(5월 5일) / 7. 현충일(6월 6일) /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9. 12월 25일(기독탄신일) / 10.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대체공휴일

1. 설날(추석) 연휴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2.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사례] 공휴일에 12시간을 근무할 경우 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어

- 8시간은 휴일근로로만 인정 :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로 인정 : 휴일근로 50% 가산과 연장근로 50% 가산이 중복되므로 통상임금의 100% 가산하여 지급

4. 202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9. 12.)

- 종래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10쪽)'는 문구를 삭제
-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2018다 231536 판결 등을 반영